

부속서 III

금융서비스에 대한 비합치 조치

영국의 유보목록

서설

1. 제 7-라장(금융서비스)에 따른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.

2. 아래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.

가. 제 1 절에서는 제 7 라.10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영국의 기존의 조치

- 1) 제 7 라.3 조(내국민 대우)
- 2) 제 7 라.4 조(최혜국 대우)
- 3) 제 7 라.5 조(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)
- 4) 제 7 라.6 조(국경 간 무역), 또는
- 5) 제 7 라.9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, 그리고

나. 제 2 절에서는 제 7 라.10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영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

- 1) 제 7 라.3 조(내국민 대우)

- 2) 제 7 라.4 조(최혜국 대우)
- 3) 제 7 라.5 조(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)
- 4) 제 7 라.6 조(국경 간 무역), 또는
- 5) 제 7 라.9 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)

3. 제 1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, 언급된 경우,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.

다. **관련의무**는 제 7 라.10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열거된 조치 또는 조치들에 적용되지 않는 제 2 항가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.

라. **정부수준**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

마. **조치**는 유보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. **조치**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

- 1)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개정,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 그리고
- 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. 그리고

바. **유보내용**은 비합치 조치를 규정하고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.

4. 제 2 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
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
나. **하위분야**는 언급된 경우,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.

다. **관련의무**는 제 7 라.10 조(비합치 조치)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 2 항나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.

라. **정부수준**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 그리고

마. **유보내용**은 유보가 적용되는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,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.

5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 7 라.11 조(예외)의 것과 같이 이 장에 적용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는 이 부속서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. 조치를 열거하는 것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치가 제 7 라.11 조(예외)의 것과 같이 예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6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영국은 제 7 라.11 조(예외)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에서 설립된 기업이 영국에 설립한 지점에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.

7. 제 1 절의 유보항목의 해석에서

가. **유보내용**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.

나. **관련의무**는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 3 항다호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. 그리고

다.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관련 의무에 비추어 해석된다. **조치**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
8. 제 2 절의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. **유보내용**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.

9. 제 7 라.5 조(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)에 대한 영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지점을 제외한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영국에 설립 시, 비차별적으로, 특정한 법적 형태를 채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.

제 1 절

분야	모든 금융서비스
하위분야	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(보험 제외)
관련의무	제 7 라.5 조 (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)
정부수준	중앙정부
조치	2000 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(2000 년 제 8 호) 제 19 조, 제 22 조, 제 31 조, 제 426 조 및 제 428 조, 제 4A 부, 제 9A 부 및 제 17 부, 부칙 2 의 제 25 항 및 부칙 6 의 제 2B 항 2013 년 대체투자펀드운용자규정(SI 2013/1773) 규정 3, 규정 10 및 규정 57 2001 년 개방형투자회사규정(SI 2001/1228) 규정 14 및 규정 15

유보내용

영국에 설립되고 영국에 영업소를 보유한 기업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. 유닛 트러스트(unit trusts) 및 투자회사를 포함한 공모펀드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, 영국에 설립되고 영국에 영업소를 보유한 전문 운용회사의 설립이 요구된다.

제 2 절

분야	모든 금융서비스
관련의무	제 7 라.6 조 (국경 간 무역)
정부수준	중앙정부
유보내용	영국은 제 7-다장(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)의 규정에 따라,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GATS 상 영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.”